

■ 치과 칼럼

잇몸병(치주염)

잇몸병(치주염, periodontitis)이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생긴 치태(plaque)가 입안의 침 등 여러 가지 미네랄과 결합해 치석(calculus)을 이루고, 이 치석에 있는 세균들이 잇몸뼈를 녹아내리게 해서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증상으로는 잇몸이 붉게 부어 오르고, 잇몸에서의 출혈, 이와 잇몸 사이의 간격이 벌어짐과 심한 경우 잇몸에서 고름이 나오고, 이와 흔들립니다. 치주염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어떠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별 증상이 없어서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질환도 원인이 될 수 있어 특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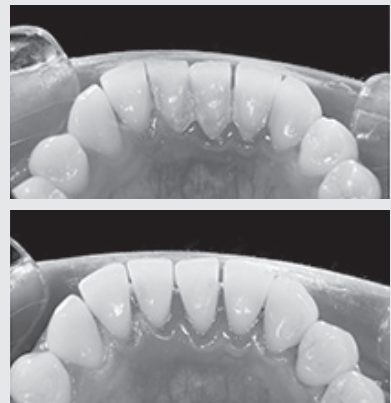
치주염의 가장 큰 원인은 치석입니다. 치석은 마치 돌덩어리처럼 단단히 잇몸 위나 뿌리에 달라붙어 있어 일단 형성되면 칫솔질로 제거될 수 없습니다.

치태 또는 플라그는 어느 누구든 식사 후 15분 정도면 치아의 표면에 형성되는 얇은 박테리아로 이뤄진 막입니다. 이 막이 바른 양치질과 치실에 의해 깨끗이 제거 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구강 내의 침과 여러 미네랄과 결합해 치석을 이루게 됩니다. 이 치석에 상주하는 세균, 특히 잇몸 밑의 뿌리에 붙어 있는 치석의 박테리아는 강력한 산(acid)기를 잇몸뼈에 내뿜어, 치조골이 천천히 녹아 내리게 됩니다. 이 증상이 계속 진행 되면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이를 뽑아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치주염은 초기에는 통증이 없기에 치과 방문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잇몸이 붓거나 통증이 생기

면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지만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치주염 역시 모든 질환처럼 예방이 중요합니다.

치주염의 낮은 단계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의 치조골이 남아서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치료 방법은 치아 곁에만 치석이 있는 경우에는 스케일링을 통해 치료할 수 있고 잇몸 속까지 치석이 있는 경우 국소 마취를 하고 root planing,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딥클리닝이나 gingivectomy 즉, 잇몸을 절개하여 치근의 치석을 제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자가혈을 이용하여 잃어버린 잇몸뼈를 재생하는 시술이 나특수한 단백질 덩어리를 치근에 발라서 잇몸뼈 조직을 활성화 시켜 치조골을 재생시키는 신기술도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후에도 지속적으로 집에서 관리 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간격으로 치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웰컴치과그룹 이주영 원장
(로마린다 치대 졸업)
Korea Town: (213) 381-2827
Irvine: (714) 838-2875
Fullerton: (714) 552-5373



■ 법률 칼럼

시민권 신청 시 주의사항

직장 또는 사업 문제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했던 영주권자들이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많은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신청 시기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는 취득일로부터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외의 경로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영주권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신청서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5년이 되기 전 90일 이전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군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또는 1년 이상 복무 후에 전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시민권을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만 18세부터 26세 사이에 미국에 거주했던 영주권자의 유의 사항

만 18세부터 26세 사이에 미국에 거주했던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Selective Service System 라고 불리는 징병 대기자 명단에 신청자가 등록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미국을 위해서 전쟁에 참전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참전 사의 결여는 결국 미국민으로서의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결여로 해석되기 때문에 시민권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만 26세가 되지 않았고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26세 생일이 지나기 전에 www.sss.gov에 접속해 등록하기 바랍니다.

3)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법원의 최종 판결문 인증 사본(certified copy)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probation)를 받았다면 그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에 재판을 받았던 법원에서 위의 서류들을 발급받아 시민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함

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변호사와 상의해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도덕적 품성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 성격의 자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4) 신청자의 세금보고서

시민권 인터뷰 시에 영주권 취득 이후의 세금보고서를 이민관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시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잘 수행한 것이 좋은 시민이 될 좋은 도덕적 품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5) 시민권 신청의 근거가 되는 영주권의 합법성

최근 이민국 경향을 보면, 시민권 인터뷰 시에 이민관들이 시민권 신청 자격의 근거가 되는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획득했는지를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특별히 조심을 해야 할 대목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시에 이민관은 시민권 신청자가 영주권 취득 후 스ponsor 회사에 취업했는지 그리고 영주권 청원서에 나와 있는 적정임금을 받고 일했는지를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인이 이민청원서(I-140)에 명시된 조건으로 일을 했어야 그 영주권의 합법성이 증명되기 때문에 이민관이 이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취업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그 회사를 위해서 일했다는 증거로 세금보고서나 W-2 등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스ponsor해 준 회사의 폐업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경우는 회사의 폐업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 OC Office: (714) 522-5220
6281 Beach Blvd., #300
Buena Park, CA 90621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www.myevergreenschool.com

“에버그린 프리스쿨입니다”

GOD IS LOVE 1JOHN4:19

evergreen
PRESCHOOL • KINDERGARTEN
SINCE 2012

“아이들이 VISION을 꿈꾸는 학교”

588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714.670.9687